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2월 3일 김포시장

나. 상 정 일 자 : 2024년 12월 16일

다. 의 결 일 자 : 2024년 12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예치금회수 등을 세입으로 하고 고유목적사업비·예치금 등을 세출로 하는 기금에 관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맞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함.

나. 주요골자

〈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운용 계획			2024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계	0	0	0	0	0
관광진흥기금	0	0	0	0	0

3. 검토보고 : 생략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주문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